

연세유업 아산공장 폐기물 처리 업무 지침서

1. 업무목적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에 준하여 폐기물의 발생, 보관, 저장 및 운반, 처리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업무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829 연세유업 아산공장 內																									
3. 계약기간	· 2021년 8월 ~ 2024년 7월 (기본 3년) ※ 기본 계약기간 종료 후, 내부 평가 및 가격 검토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2회 연장 가능 (총 5년)																									
4. 업무내용	1) 위탁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table><tr><th>구분</th><th>발생장소</th><th>보관방법</th><th>처리방법</th><th>발생량(ton)</th></tr><tr><td>폐수처리오니 (51-01-08)</td><td>폐수처리장</td><td>케익호퍼</td><td>위탁처리(재)</td><td>1,530</td></tr><tr><td>폐합성수지 (51-03-01)</td><td>전 공정</td><td>암롤박스</td><td>위탁처리(소각)</td><td>165</td></tr><tr><td>콩비지 (51-17-29)</td><td>두유가공</td><td>암롤박스</td><td>위탁처리(재)</td><td>1,080</td></tr><tr><td>두피 (51-17-29)</td><td>두유가공</td><td>포대자루</td><td>위탁처리(재)</td><td>105</td></tr></table> ※ 콩비지 함수율은 약 81%~82% 수준임 (1) 발생량은 당사 2020회계연도(3월~익년2월) 연간 기준이며, 당사 사업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최소 물량을 보장하지 않음 (2) 폐기물 처리비용(단가)은 당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상차·계근·뒷정리를 포함하여 수집·운반 후 중간·최종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함 2)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관할청에 관련법에 의한 제반 신고 업무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수집·운반·처리 의뢰한 지정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종류별로 운반 및 적정처리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집·운반·처리비에 포함시키며, 처리내역을 관련 규정에 의한 올바른 시스템에 의한 대장 및 인계서 등으로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발생장소	보관방법	처리방법	발생량(ton)	폐수처리오니 (51-01-08)	폐수처리장	케익호퍼	위탁처리(재)	1,530	폐합성수지 (51-03-01)	전 공정	암롤박스	위탁처리(소각)	165	콩비지 (51-17-29)	두유가공	암롤박스	위탁처리(재)	1,080	두피 (51-17-29)	두유가공	포대자루	위탁처리(재)	105
구분	발생장소	보관방법	처리방법	발생량(ton)																						
폐수처리오니 (51-01-08)	폐수처리장	케익호퍼	위탁처리(재)	1,530																						
폐합성수지 (51-03-01)	전 공정	암롤박스	위탁처리(소각)	165																						
콩비지 (51-17-29)	두유가공	암롤박스	위탁처리(재)	1,080																						
두피 (51-17-29)	두유가공	포대자루	위탁처리(재)	105																						

4. 업무내용

- (3)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분기1회 이상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고 당사
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유선으로 연락 시에는 5일 이내에 당사가 지정
하는 장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처리된 폐
기물에 대하여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4) 계약된 폐기물 중 계약상대자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해당시설 및 장비의 파손 등으로 동 폐기물을 수집·운반·처
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본 계약체결 후 당사의 위탁처리대상 폐기물이 당사 구역 밖으로
반출되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위
임하거나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지입 또는 양도할 수 없
다.
- (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 중 당사의 물적·인적 손실을
유발할 경우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거 전, 수거 후 증빙사진을 제출하여야 한
다.
- (9) 계약상대자는 위탁처리대상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모
든 활동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